

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0호(2020.9.17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56호(2021.9.23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80-5외 1필지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9조 제1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18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시장정비사업

나. 명 칭: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80-5,9

나. 면 적: 2,939.3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(주)시장법인서울마켓 (대표 안동관)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5라길 8 (마장동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1년 11월 18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해당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구 분	획 지 1	비 고
대 지 면 적	2,939.3㎡	
건축면적(건폐율)	1,759.09㎡(59.85%)	
연 면 적(용적률)	21,499.39㎡(325.76%)	
최 고 높 이	48m	
층 수	지하5층~지상10층	
주 용 도	판매시설, 공장, 창고, 오피스텔	
오피스텔호수	102호	
주 차 대 수	154대	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해당없음

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제 처리사항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0조제1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가.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「하수도법」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
11. 본 고시내용 외의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86-657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